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42

발의연월일: 2022. 8. 29.

발 의 자: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 · 양정숙 · 안규백

오영환 · 이상헌 · 신정훈

이용선 · 민형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% 감면하고 있는데,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.

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%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 써 최근 쌀값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·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 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하여 올해 2 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혂 했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계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 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---- 2027년 12월 31일 ----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 · 영어자금 · 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